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한시적 인정 유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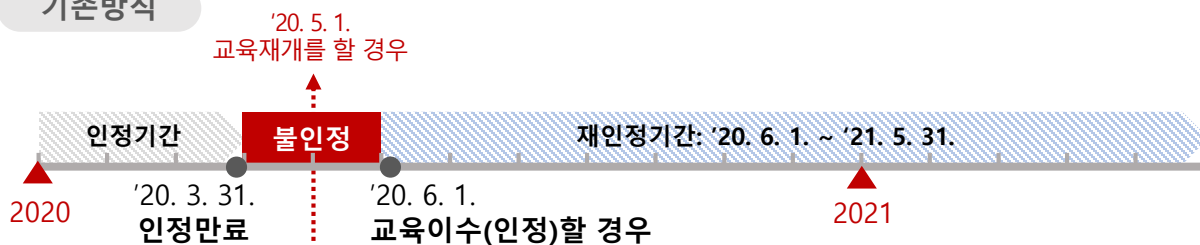
「코로나19」 관련 감염병 발생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.
사업장의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위해
『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』인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실시합니다.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 유예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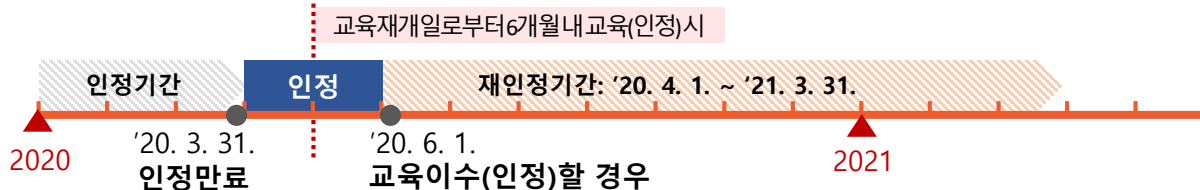
'20년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
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(인정)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를 적용하는 한시적 방안

예시 인정기간이 '19. 4. 1. ~ '20. 3. 31. 인 사업장의 경우

기존방식



유예방식



“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”

추후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재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